

“자원순환형 사회를 선도하는”



## 한국건설자원협회

수신자 각 지회장 및 대표이사  
(경유)

참 조 사무국장

제 목 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 공포·시행 알림



1.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지개량행위를 위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, 농지 개량에 적합한 토양 범위 및 성토기준을 구체화\*하는 내용의 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(안)을 입법예고('24.10.29~12.9) 한 바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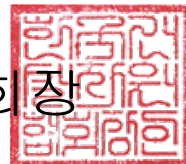
\* 순환토사는 경작용 농지 성토 시 사용을 제한하고, 경작용 농지 외 성토 시 지표면 1미터 이내 사용 제한규정 예외 적용

2.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경작용 농지에도 순환토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하고,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환경부 및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적극 대응 해왔습니다.

3.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협회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하여 조건부로 순환 토사를 경작용 농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을 공포·시행(주요 내용 붙임 참조)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 주요 내용 1부. 끝.

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



01/03

주임 **염경미** 팀장 **권병문** 부장 **강한서** 사무총장 **조정환** 회장 **박하준**

협조자

시행 정책기획부-4 (2025.1.3.) 접수

우 06752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27길 2 (양재동, 일동홀딩스(주)사옥) 3층 / <http://www.koras.org>

전화 02-2046-5923 전송 02-3476-8464 / [cped2110@koras.org](mailto:cped2110@koras.org) / 공개